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47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김장겸 · 안철수 · 이상휘
김정재 · 최형두 · 강명구
성일종 · 서천호 · 박덕흠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 등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투브는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하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투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접근하는 등 유투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만약 이런 정보들을 행정권이 개입하여 삭제하거나 규제한다면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음.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 · 중재를 통해 당

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정보를 정의하고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정보 등의 정정정보게재 청구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에 준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보도 그 매개와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 인한 침해를 이 법의 목적에 포함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등의 심의 대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7조).

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정정정보게재·반론정보게재·추후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정정정보게재청구등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등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매개(媒介)로”를 “매개(媒介), 이와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로, “언론의”를 “언론·표현의”로 한다.

제2조에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6호의2, 제17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온라인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재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14의3. “확산온라인정보”란 온라인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게재물의 조회 수

나. 게재물의 공유 또는 재게재 수

다. 그 밖에 게재물의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의2. “정정정보게재”란 온라인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게재하는 것을 말

한다.

17의2. “반론정보게재”란 온라인정보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22. “온라인정보제공자”란 온라인정보를 게재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게재물의 평균 조회 수

나. 구독자 수

다. 온라인정보 게재로 얻는 연평균 수익

라. 그 밖에 게재물의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를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 이와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로 한다.

제3장제5절을 제6절로 하고, 같은 장에 제5절(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 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온라인정보 등에 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 등

제31조의2(온라인정보 등에 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권 등)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

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의 제공자(이하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정정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반론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게재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추후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정정보게재 청구, 제2항에 따른 반론정보게재 청구, 제3항에 따른 추후정보게재 청구(이하 “정정정보게재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정보게재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정정정보게재청구등은 그 대상인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게재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청구의 내용을 온라인정보제

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정보제공청구권) ① 정정정보게재청구등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에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제공 즉시 해당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정보제공청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준용규정) 정정정보게재청구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도”를 “보도,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로, “언론사에”를 “언론사,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이하 “권고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언론사에”를 “권고대상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언론사별로”를 “권고대상자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언론사는”을 “권고대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언론사는”을 “권고대상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u>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u> 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매개(媒介), <u>이와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u> <u>진 행위로</u> ----- ----- ----- ----- <u>언론 · 표현의</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u>14의2. “온라인정보”란 「정보</u> <u>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u> <u>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u> <u>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u> <u>통하여 게재된 부호 · 문자 ·</u> <u>음성 · 음향 · 화상 · 동영상 등</u> <u>의 정보를 말한다.</u>
<u><신 설></u>	<u>14의3. “확산온라인정보”란 온</u> <u>라인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15 · 16. (생략)

<신설>

17. (생략)

<신설>

18. ~ 21. (생략)

<신설>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게재물의 조회 수

나. 게재물의 공유 또는 재게재 수

다. 그 밖에 게재물의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정정정보게재”란 온라인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17. (현행과 같음)

17의2. “반론정보게재”란 온라인정보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18. ~ 21. (현행과 같음)

22. “온라인정보제공자”란 온라인정보를 게재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
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⑪ (생략)

<신설>

<신설>

말한다.

가. 게재물의 평균 조회 수

나. 구독자 수

다. 온라인정보 게재로 얻는
연평균 수익

라. 그 밖에 게재물의 전파가
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 매개(이하 “언론보
도등”이라 한다), 이와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

-----.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5절 온라인정보 등에 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 등

제31조의2(온라인정보 등에 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권 등)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
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진실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의 제공자(이하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라 한
다)에게 정정정보게재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
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
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
에게 반론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
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온라
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게재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
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
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
라인정보제공자에게 추후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
산온라인정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정정보게재 청구, 제2항

<신 설>

에 따른 반론정보게재 청구, 제 3항에 따른 추후정보게재 청구 (이하 “정정정보게재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정보게재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정정정보게재청구등은 그 대상인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게재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청구의 내용을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정보제공청구권) ① 정정정보게재청구등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신 설>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에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제공 즉시 해당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정보제공청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준용규정) 정정정보게재청구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등에 관

제5절 시정 권고

제32조(시정 권고) ① 중재위원회
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
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
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정 권고는 언론사에 대하
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
로 시정 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 권고에 불복하는 언론
사는 시정 권고 통보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
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
출할 수 있다.

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시정 권고

제32조(시정 권고) ① -----
-----보도, 온라인정보제공
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
라인정보-----
-----언론
사,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
산온라인정보제공자(이하 “권
고대상자”라 한다)에게-----
-----.

② (현행과 같음)

③ ----- 권고대상자에 ---

---.

④ ----- 각 권고대상자별
로 -----
-----.

⑤ ----- 권고대상
자는 -----
-----.

⑥ 권고대상자는-----

-----.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	----------------